

災害影響評價制 運用要領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¹⁾, 이종설²⁾

1.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각종 개발사업은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피복되어 있던 지역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 유역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수리·수문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지표형태의 변화는 강우의 지하 침투량과 식생에 의한 차단 및 증발산량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러한 요인의 변화로 하천으로의 직접유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침투유출량이 개발전의 상태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침투유출량의 도달시간도 짧아지게 된다. 이는 하류부 하천에서 부담해야할 홍수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외수범람에 의한 침수피해 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관거의 과부하 및 하류부 도시지역의 내수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발로 인한 홍수 및 토사 유출특성의 변화, 사면안정 요인의 변화 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유출의 억제 및 안전한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전예방차원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 재해영향평가제도이며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근거를 두고 도입·시행되고 있다.

2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정의 및 의의

재해영향평가제도는 방재업무가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에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된 1992년 이후 재해복구 위주의 방재정책에서 재해예방위주의 방재정책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3년간의 연구와 부처간의 협의, 근거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거쳐 1996년 6월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계획이 수립, 입안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유역의 치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피해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재해영향평가제도의 내용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재해영향평가제도는 2001년 1월 환경, 교통, 인구 영향평가제도와 더불어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합영

1)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 연구관
2)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 연구관

향평가제도는 1999년 12월 31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0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총칙,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의 협의, 환경영향평가특례, 보칙, 벌칙 등 총 6장 42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기관, 당해 사업의 승인기관,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대상사업의 적용규모가 확대되었고,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해영향평가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어 2001년 7월 1일 이후 시도조례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방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하여 간이평가서(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 작성, 사전에 심의토록 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 분	대상사업	대상규모	
		재 해 영향평가	지방재해 영향평가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30만㎡	15만㎡
	(2) 도시재개발 사업	30만㎡	15만㎡
	(3)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법)		
	가. 유통업무설비	30만㎡	15만㎡
	나. 유수지	30만㎡	15만㎡
	(4)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0만㎡	15만㎡
	(5) 대지조성사업	30만㎡	15만㎡
	(6) 택지개발사업	30만㎡	15만㎡
	(7)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공동집배송 단지조성사업	30만㎡	15만㎡
	(8) 화물터미널 설치공사	30만㎡	15만㎡
	(9) 학교(고등교육법)	30만㎡	15만㎡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단지개발사업	30만㎡	15만㎡
	(2) 중소기업 단지조성사업	30만㎡	15만㎡
	(3) 자유무역지역	30만㎡	15만㎡
	(4) 공장	30만㎡	15만㎡
다.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사업	30만㎡	15만㎡
	(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0만㎡	15만㎡
	(3) 온천의 개발사업	30만㎡	15만㎡
	(4) 유원지(도시계획법)	30만㎡	15만㎡
	(5)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30만㎡	15만㎡
라. 산지의 개발	(1) 묘지조성사업	30만㎡	15만㎡
	(2) 토석·광물 채취사업	30만㎡	15만㎡
마. 특정지역의 개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가~라, 바 대상사업)	30만㎡	15만㎡
바.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	30만㎡	15만㎡